

2023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3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6일

소 방 청 장

I. 시험개요

1 선발예정인원: 1,560명 ※ 법무, 항공분야는 별도 공고 예정

시도	총계	공개경쟁채용(이하 '공채')			경력경쟁채용(이하 '경채')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양성
합계	1,560	730	667	63	830	575	153	102
중앙	31	-	-	-	31	31	-	-
서울	257	132	118	14	125	104	11	10
부산	119	52	45	7	67	48	17	2
대구	48	28	23	5	20	15	4	1
인천	138	95	86	9	43	39	3	1
광주	50	25	23	2	25	14	11	-
대전	29	15	13	2	14	9	2	3
울산	21	3	3	-	18	15	3	-
세종	3	-	-	-	3	2	1	-
경기	422	190	185	5	232	120	60	52
강원	58	26	24	2	32	27	3	2
충북	89	46	42	4	43	28	12	3
충남	19	6	4	2	13	10	3	-
전북	67	20	18	2	47	35	6	6
전남	61	18	16	2	43	24	5	14
경북	44	29	27	2	15	10	5	-
경남	46	23	21	2	23	15	3	5
제주	35	15	13	2	20	15	2	3
창원	23	7	6	1	16	14	2	-

- 1) 최종합격자는 최초 임용된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5년 이내에는 다른 시도로 전보(인사교류 등)가 제한될 수 있음
- 2) 채용분야, 응시자격기준 및 선발예정인원 등은 시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학교(이하 "시도 소방본부"라 한다)의 인력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일정 변경사항은 소방청 및 119 고시(<https://119gosi.kr>) 누리집(이하 "119고시"라 한다)을 통하여 재공고합니다.

□ 경제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계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계	830	31	125	67	20	43	25	14	18	3	232	32	43	13	47	43	15	23	20	16
건축	6					1		2			2				1					
소방사	6					1		2			2				1					
남성	1														1					
양성	5					1		2			2									
구급	506	6	91	46	9	28	20	7	8	3	150	26	15	10	25	20	11	12	11	8
소방사	506	6	91	46	9	28	20	7	8	3	150	26	15	10	25	20	11	12	11	8
남성	365	6	81	31	6	25	10	5	6	2	90	24	5	8	20	15	6	9	9	7
여성	141		10	15	3	3	10	2	2	1	60	2	10	2	5	5	5	3	2	1
구조	147	18	19	10	5	11		4	7		30		10		8	9	2	6	4	4
소방사	147	18	19	10	5	11		4	7		30		10		8	9	2	6	4	4
남성	147	18	19	10	5	11		4	7		30		10		8	9	2	6	4	4
소방	7										2							5		
소방사	5																	5		
양성	5																	5		
소방장	2										2									
양성	2										2									
소방관련학과	79		4	5	3		4		3		30	4	12	3	3	3			2	3
소방사	79		4	5	3		4		3		30	4	12	3	3	3			2	3
남성	34		3	3	2		3		2			3	10	2	2				2	2
여성	12		1	2	1		1		1			1	2	1	1					1
양성	33										30					3				
소방정(기관사)	3					1							2							
소방사	3					1							2							
남성	1					1														
양성	2												2							
소방정(항해사)	3			1		2														
소방사	3			1		2														
남성	3			1		2														
심리상담	3				1								1						1	
소방사	3				1								1						1	
양성	3				1								1						1	
안전관리(화재조사)	9		5								4									
소방사	9		5								4									
양성	9		5								4									

채용분야	계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차원
의무소방전역	3												3							
소방사	3												3							
남성	3												3							
자동차운전	10									5						3	2			
소방사	10									5						3	2			
남성	2																2			
양성	8									5						3				
자동차정비	14		1	3						5					3				2	
소방사	14		1	3						5					3				2	
남성	7		1	3											3					
양성	7									5									2	
전기	3														1	2				
소방사	2															2				
양성	2															2				
소방장	1														1					
양성	1														1					
정보통신	11			2				1			2				2	4				
소방사	11			2				1			2				2	4				
양성	11			2				1			2				2	4				
정보통신(빅데이터)	2									2										
소방사	2									2										
양성	2									2										
정보통신(전산)	3		3																	
소방사	3		3																	
양성	3		3																	
정보통신(통신)	2		2																	
소방사	2		2																	
양성	2		2																	
화학	19	7			2		1			2					4	2				1
소방사	9				2		1			2					1	2				1
남성	5				2		1								1					1
양성	4									2						2				
소방교	7	7																		
남성	7	7																		
소방장	3														3					
양성	3														3					

2

시험일정

단계	시험절차	시행공고일	시험예정일	합격발표일
원서접수	2. 13.(월) 10:00~2. 17.(금) 18:00 ※ 접수취소는 2. 20.(월) 18시까지 가능			
1단계	필기시험	3. 9.(목)	3. 18.(토)	4. 14.(금)
2단계	체력시험	4. 14.(금)	4. 17.(월)~5. 7.(일)	5. 11.(목)
3단계	서류전형	체력시험 합격자 공고 시 안내(시도 공고문 참고)		
4단계	종합적성검사	5. 11.(목)	5. 16.(화)	7. 7.(금)
	면접시험		5. 23.(화)~5. 26.(금)	
▶ 시험단계별 세부내용 및 시험일정 변경사항 등은 119고시에서 확인				

3

응시자격 및 복수국적자 임용

가. 응시자격 등 기준일

구분	종류	응시자격 등 기준일
공통	응시 결격사유 ¹⁾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23. 5. 26.(금)
	운전면허 ²⁾	최초시험 예정일(필기시험일) '23. 3. 18.(토)
	취업지원, 의사상자 등	최초시험 예정일(필기시험일) 전일 '23. 3. 17.(금)
	필기시험 대체 성적	한국사 '19. 1. 1.부터 '23. 3. 17.까지 취득한 성적표
		영어 (성적 사전등록자 ^{3년}) '20. 1. 1.부터 '23. 3. 17.까지 취득한 성적표 (성적 사전미등록자 ^{2년}) '21. 3. 18.부터 '23. 3. 17.까지 취득한 성적표
공채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23. 5. 26.(금)
	응시연령	2023년도 기준(5페이지 응시연령 참고)
경채	응시연령	
	경력요건 자격·면허	최초시험 예정일(필기시험일) '23. 3. 18.(토)
	경력(근무)기간 산정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23. 5. 26.(금)
	인정학과 기간 산정	최초시험 예정일(필기시험일) '23. 3. 18.(토)
1) 응시 결격사유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 2)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응시자격 요건이 되는 운전면허·자격(증) 효력은 유효하여야 하며,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소멸되면 응시 자격이 박탈되고 합격 결정이 취소됨 ▶ 자격(면허)은 합격일이 아닌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을 연기하는 경우, 응시자격 등 기준일 판단은 아래와 같음 ① 첫 번째 시험 시행 전에는 연기·변경 후 시행되는 시험예정일 적용(추가 원서접수 없음) ② 첫 번째 시험 시행 후에는 당초 시험예정일 적용		

나. 응시 결격사유 및 복수국적자 임용

1)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음의 관계 법령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나)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라)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마)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이란 다음의 기관을 말한다.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는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제출 시 참고)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알리오 누리집에서 확인)
-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으로 함

2) 복수국적자 임용

- 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 나) 「공무원임용령」 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 다) 「국적법」 제11조의2제2항(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복수국적자는 「국적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외국국적 포기확인서’를 교육기관 입교 전까지 시험에 응시한 시도 소방본부에 제출해야 함(복수국적자는 임용이 제한될 수 있음)

4 응시연령

분야별	계급	연령	생년월일
공채, 경채	소방사	18세 이상 40세 이하	2005. 12. 31.~1982. 1. 1.
경채	소방교·소방장	20세 이상 40세 이하	2003. 12. 31.~1982. 1. 1.
	소방위·소방경	23세 이상 40세 이하	2000. 12. 31.~1982. 1. 1.

▷ 다음의 관계법령에 따른 응시자는 아래와 같이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함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제대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
- 「병역법」 제74조의2에 따라 복무를 마친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의2에 따라 3세의 범위에서 응시상한연령을 연장(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복무 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사람 포함)
-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범위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
연장기간	1세	2세	3세

5 신체검사 및 운전면허

가. 신체검사

- 1) 신체조건표: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 2) 불합격기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 별표 3

▶ 소방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후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체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한 내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불합격 처리합니다.

나. 운전면허요건

- 1) 공채분야 응시자와 경채분야 중 소방장 이하 응시자는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일 것
- 2) 필기시험일까지 보유해야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유효할 것

※ 운전면허증을 보유하지 않은 응시자는 필기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고 불합격으로 처리함

6 채용시험 가점

가. 대상자 및 비율 ※ 가점 관련 관계 법령 개정 시행 시에는 최신법령 적용

구 분		가산비율	적용시기	비고
공통	취업지원대상자 ¹⁾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시험단계별 적용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의사상자 등 ²⁾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이나 가족)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공채	자격증 등 소지자 ³⁾ 소방업무관련분야 사무관리분야 한국어능력검정시험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최대 5% 이내에서 가산	최종 환산점수에 적용	동일한 분야에서 가점 인정 대상이 두 개 이상일 경우에는 분야별로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취업지원대상자 등),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2)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3)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6(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

나. 가점 적용

- 1)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은 각각 적용
- 2)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은 필기·체력·서류전형·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에 합격한 응시자에게 적용
- 3)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의 자료 제출기한은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까지로 하며 정지, 취소, 기간만료 등으로 유효하지 않으면 불인정

☑ 주요 개정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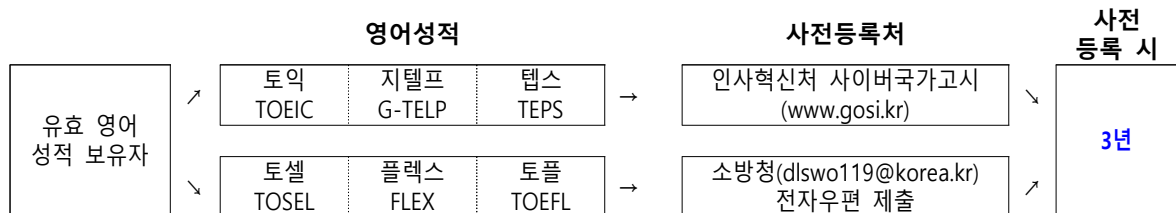
① 한국사, 영어 과목의 능력검정시험 대체

가. (개정사항) 영어, 한국사는 영어능력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나. (인정기준)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하고, **성적이 유효**한 경우에만 인정

☑ 주의사항

- 기준등급 또는 기준점수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필기시험을 채점하지 않으며 불합격 처리함
- **영어성적**을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시험시행기관에서 정하는 영어성적의 유효기간만 인정하므로 **사전등록을 권고함**

1) (영어) 보유 성적에 따라 **소방청** 또는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 등록한 경우 3년 인정**



2) (한국사) 선발시험 공고문에 제시된 기간 내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제출
 [응시원서 접수 시 119고시(119gosi.kr)에 등록]

② 가점 분야 확대

가. (가점분야) 기존 2개 분야에서 **4개 분야로 확대**

기존	1. 소방업무 관련분야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취득한 사람 2.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확대	3. 한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일정 기준점수 또는 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 4.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일정 기준점수 또는 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가점부여) **기존** 필기시험 점수에 부여, **변경** 최종 환산점수에 부여

한국실용 글쓰기	보수교육을 받은 성적은 인정하되,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성적에 대해서만 인정
외국어능력 검정시험 (영어)	1. 사전등록과 관계없이 시험시행기관에서 정하는 유효기간만 인정 2. 과목 대체와는 별개로 가점비율에 해당하는 기준점수 또는 등급 이상 충족하는 경우 가점으로 추가 인정 3. 영어능력검정시험은 정기(정규) 시험성적만 인정

기준점수(등급) 이상의 영어성적표(인증서)는 필기시험을 대체하며, 자격 가점으로도 인정함

③ 자격증 등 가산 방법

가. (가산방법) 동일한 분야에서 가점 인정대상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분야별로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나. (가산한도) 1. 소방업무관련분야, 2. 사무관리분야, 3. 한국어능력검정시험, 4.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 포함된 가점을 합산할 수 있으나 **5% 이내에서 가능**

II. 원서접수

1 원서접수 방법

가. 접수기간: '23. 2. 13.(월) 10:00~2. 17.(금) 18:00

※ 취소기한은 2. 20.(월) 18시까지(주말·공휴일 취소 가능)

나. 접수결과: '23. 2. 23.(목) 14:00 / 119고시에 공고

다. 접수방법: 119고시(119gosi.kr)

- 1) 원서접수는 인터넷 접수만 가능(우편, 팩스, 전자우편은 불가능)
- 2) 거주지 제한은 없으나 응시지역과 응시분야는 중복접수가 불가함
- 3)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주말·공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접수 가능
- 4) 원서접수를 취소하거나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지 않으면 응시원서 접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응시 포기 처리함

※ 119고시 접속 시간과 관계없이 원서접수 마감일 18시 이후부터는 접수 또는 등록정보 수정은 불가하며, 원서접수 마감일 21시까지 결제를 완료해야 함

- 5) 응시자는 원서접수 완료 후 정확한 접수가 되었는지 119고시에서 확인할 것(119고시 → 마이페이지 → 원서제출내역)
- 6) 원서접수 이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응시자는 시험단계마다 신분증, 응시표,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서류를 소지할 것

※ 인적사항 변동자는 면접시험일부터 최종합격일 기간에 119고시에 증명자료 등록

2 응시수수료

계급	응시수수료
소방사, 소방교	5,000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	7,000원

가. 원서접수 취소기한 내에 접수를 취소한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으나 별도의 추가 비용은 반환되지 않음

※ 휴대전화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 시 처리 비용 발생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를 먼저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관련 사실 조회 후 응시수수료를 반환 처리함

☑ 원서접수 유의사항

- 사진기준: 반명함(3cm×4cm), 사진 파일(JPG, GIF, PNG, DMP), 해상도(100DPI 이상)
 - 사진등록: 응시자 본인을 특정할 수 없는 사진* 등록 시 불이익 발생
 - *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온 사진, 동물·식물 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응시자 개인정보 불일치(거짓 작성, 오기, 누락), 연락 불능, 응시자격 미충족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채용시험 단계마다 같은 사진을 사용하므로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 사진 교체 불가
- * 원서접수 시 119고시에 등록한 사진은 면접시험까지 사용함

3 유의사항

- 가. 원서접수 시 응시자격 및 자격가점, 복수국적 등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는 것에 반드시 동의할 것
- 나.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기재된 사항을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 수정은 불가함
- 다. 공채분야 응시자 중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면접 시험 최종예정일(23. 5. 26.)까지 해당 자격증 등을 소지해야 함

원서접수 시 준비사항

- (공 통) ① 사진 파일
- (해당자) ②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록증 사본 ③ 자격(면허)증 또는 자격취득확인서 사본
 - ④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⑤ 군복무확인서
 - ⑥ 소방관련학과: 졸업·성적·수료증명서 또는 재학(제적)증명서 中 1부
 - ⑦ 학위 응시자: 졸업증명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 라. 발급받은 지 오래된 자격증은 법령 개정으로 자격 명칭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현행 자격 명칭을 정확하게 확인할 것

※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증 검증 사이트: 큐넷(www.q-net.or.kr/☎1644-8000)

- 마. **취업지원대상자**는 **보훈(지)청**에 본인의 가산비율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의사상자 등**(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이나 가족)은 **보건복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증명서류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 발급: 정부24(www.gov.kr)

※ 의사상자 등 확인: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044-202-3255

- 바. 가산점의 허위기재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가산점 등록 시 유의할 것

4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기준점수

구분	TOEFL		TOEIC	TEPS (‘18.5.12. 이후 시험)	G-TELP	FLEX	TOSEL
	PBT	IBT					
소방경 소방위	490점 이상	58점 이상	625점 이상	280점 이상	50점 이상 (level 2)	520점 이상	Advanced 550점 이상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470점 이상	52점 이상	550점 이상	241점 이상	43점 이상 (level 2)	457점 이상	Advanced 510점 이상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

- 1) (사전등록자) '20. 1. 1. 이후 국내에서 시행된 시험으로써 필기시험 예정일 전일(기준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 확인된 시험만 인정됨
 - 2) (사전미등록자) '21. 3. 18. 이후 국내에서 시행된 시험으로써 필기시험 예정일 전일(기준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 확인된 시험만 인정됨. 다만, 성적 유효기간 도래('23. 3. 18.~3. 31.)가 임박한 경우 인사혁신처 또는 소방청으로 사전등록 할 것.
- ※ 외국에서 응시한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는 2020. 1. 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토플(TOEFL), 일본에서 응시한 토익(TOEIC), 베트남·미얀마에서 응시한 토셀(TOSEL), 미국에서 응시한 지텔프(G-TELP)에 한하며, 필기시험 예정일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 확인된 시험만 인정됨
- 3)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 · 민간회사 · 학교 등에서 승진 · 연수 · 입사 · 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시행하는 수시 · 특별시험 등은 인정이 불가함
 - 4)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토익, 토플, 텡스, 지텔프)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다. 성적 제출방법

- 1)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119고시에 사본을 첨부할 것. 다만 시험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접수일까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 등록기간('23. 3. 13.~3. 17.)에 반드시 등록(119고시)해야 함

- 2)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이 정확히 표기된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여권상의 영문 성명을 사용해야 함. (여권 사본 첨부)
- 3) 해당 시험기관에 확인하여 점수가 다르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성적 소명 대상자는 개별 통지), 원본 제출 및 소명하지 않은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 4) 플렉스(FLEX)는 국가 공인을 받은 「듣기 및 읽기」 평가만 해당함

5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및 확인

가. 기준등급: 2급(소방위 이상) 또는 3급(소방장 이하) 이상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

- 1)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만 인정합니다.
- 2) '19. 1. 1. 이후 시행된 시험으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일('23. 3. 17.) 까지 기준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등급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함

다. 성적 제출방법

- 1)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함
- 2) 시험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접수일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 등록 기간('23. 3. 13.~3. 17.)에 반드시 등록(119고시)해야 함

6 한국사 · 영어능력검정시험 유의사항

가. 필기시험 예정일 전일('23. 3. 17.)까지 기준점수(등급)을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는 필기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고 불합격으로 처리함

나. 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등급)는 필기시험에 반영하지 않음

다. 부정한 목적으로 성적을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 · 변조할 때는 당해 시험의 정지 · 무효, 합격 취소 및 5년간 응시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공통 서류제출 안내

구분	제출서류 목록	제출대상	제출기간	제출방법
1	운전면허증 (1종 대형, 1종 보통)	'23년부터 소방청에서 일괄 확인 방식으로 변경되어 응시자는 운전면허 취득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군복무확인서 1부	군복무 중인 사람에 한함		
3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필기시험 전일('23. 3. 17.)까지 사전등록 가능)	필기시험 응시자 중 성적표 보유자	원서접수 기간 '23. 2. 13.~2. 17. 추가접수 기간 '23. 3. 13.~3. 17.	119고시
		필기시험 응시자 중 성적표 미보유자		
4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필기시험 응시자		
5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만 해당)	필기시험 응시자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명서 (의사상자등만 해당)	필기시험 응시자		
7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 (경채 응시자는 해당없음)	체력시험 합격자	'23. 5. 11.~5. 26.	119고시
8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주소변동 사항, 병적사항 포함)	체력시험 합격자	체력시험 합격자 공고 시 안내 (119고시, 시도 누리집에 등록된 공고문 참고)	시험일 직접 제출 또는 우편
9	가족관계증명서	체력시험 합격자		
10	소방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성명, 사진, 생년월일, 수험번호, 응시분야 반드시 포함)	체력시험 합격자		
		추가 신체검사자		

※ 원서접수 만료일까지 제출서류 준비가 완료된 응시자는 추가접수 기간과 관계없이 119고시에 등록

☑ 경채분야 서류제출 안내

채용분야	제출서류	제출시기	비고
공통사항 (공공경력 / 자격증+2년)	필수서류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4대 보험 가입증명서 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소득금액증명원 1부 기타서류 - 갑근세증명서 또는 급여계좌내역서 1부 -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해산 또는 폐업) - 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 1부 - 근로계약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등 1부	체력시험 합격자 공고 시 안내 (시도 공고문 확인)	- 근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군경력자는 군 경력증명서 - 필요 시 다른 보험가입증명서도 요구할 수 있음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기간만 발급 2023년도 근무경력 증빙자료 - 폐업회사 경력증빙자료 - 계약직 경력자에 한함 - 사업체의 성격을 알 수 있을 것 예)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공공경력	의무소방 의무소방원 복무확인서 1부		전역예정자(면접시험 예정일부터 6개월)는 복무확인서에 전역예정일 명시
	심리상담 화학(소방사) - 공공경력증명서 1부 ※ 軍 경력자는 군경력증명서 1부		알리오, 클린아이 등에서 확인
	구조 (육해공군) 군경력증명서 1부 (해병대) 특수부대 복무경력 확인증 1부		계급별 임용일, 근무경력(부대), 징계, 교육 입교 기록 등 상세 기재
학위 · 소방관련학과	소방관련학과 (고등학교 포함) -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재학·휴학·제적증명서 中 1부 소방(소방장) - 졸업증명서 1부 전기(소방장) -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1부 안전관리(화재조사) - 화학(소방교, 장)	<자격증명 제출> (1차) '23. 2. 13. ~2. 17. (119고시에 등록) (2차) '23. 3. 13. ~3. 17. (119고시에 등록)	- 졸업자(고등학교, 2~4년제) - 미졸업자(4년제) - 대학교, 대학원 모두 각 1부 - 해당자만 제출
자격증 + 2년 경력	구급 - 응시자격요건 관련 자격(면허)증 1부 ※ ((구급) 간호사는 간호사 면허증 1부를 자격증명제출 시 119고시에 등록하시고, 면허신고확인증 1부는 경력증명서류 제출 시 해당 시도에 제출 ※ 자동차운전분야 軍 경력자는 '운전자자격기록부' 제출 ※ 자격(면허) 기준은 '2023년 소방공무원 응시자격기준' 참고 화학(소방사, 장) 소방(소방사, 장) 건축, 전기 정보통신 (빅데이터, 전산, 통신) 안전관리(화재조사) 소방정(기관사) 소방정(항해사) 자동차운전 자동차정비		<경력증명제출> 체력시험 합격자 공고 시 안내 (시도 공고문 확인) 1차 제출 기간에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등이 모두 갖춰진 응시자는 1차에 등록 가능

- ※ 원서접수 만료일까지 제출서류 준비가 완료된 응시자는 추가접수 기간과 관계없이 119고시에 등록
- ※ 응시자격요건 검증을 위하여 상기 서류 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모든 증명서는 발행 기관 직인이 있어야 함

Ⅲ. 시험절차

1 1단계: 필기시험

가. 일 시: '23. 3. 18.(토) 10:00

※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입실 완료(시간 초과 시 시험장 입실 불가)

나. 장소공고: '23. 3. 9.(목) 14:00

1) 응시표 출력: 119고시 → 마이페이지 → 응시표 출력

2) 응시자 준비물: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사인펜)

다. 배 점: 과목당 100점 만점

라. 시험과목: (공채) 3과목 75문항 / (경채) 2과목 65문항

구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공채	10:00~11:15 (75분)	소방학개론(25문항), 소방관계법규(25문항), 행정법총론(25문항)	
경채	10:00~11:05 (65분)	일반	소방학개론(25문항), 소방관계법규(40문항)
		구급	소방학개론(25문항), 응급처치학개론(40문항)
		화학	소방학개론(25문항), 화학개론(40문항)
		정보통신	소방학개론(25문항), 컴퓨터일반(40문항)

※ (소방관계법규 출제범위) 「소방기본법」,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과 각 법률의 하위법령(해당 법령의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는 조항은 출제범위에서 제외)

※ 건축, 구조, 소방(소방관련학과), 소방정, 심리상담, 안전관리(화재조사), 자동차정비, 자동차운전, 전기 등은 일반분야 시험과목 응시

1-1 출제문제 공개 및 이의제기

가. 답안공개: '23. 3. 18.(토) 16:00 / 119고시

나. 이의제기: '23. 3. 18.(토) 16:00~3. 19.(일) 24:00

※ 문의 기간이 경과한 후 문제문의는 불가하며 전화 문의는 받지 않음

1) 방법: 119고시에 필기시험 문제문의서 제출

※ 119고시 → 문제/정답 → 문제/정답 이의제기

2) 내용: 필기시험 출제문제 관련(오류, 복수정답, 정답없음 등)

1-2 채점 및 이의제기

가. 성적공개 및 이의제기

1) 성적공개: '23. 4. 10.(월) 14:00~

※ 119고시 → 마이페이지 → 합격/성적조회

2) 이의제기: '23. 4. 10.(월) 14:00~24:00

가) 방 법: 119고시에서 응시자 필기시험 점수 및 가점 조회

나) 이의제기: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합격/성적조회 → 이의제기신청 → 이의제기 과목 선택/기타 의견 서술 → 저장/제출

성적 이의제기 신청	
구분	이의제기 과목 선택
공채	소방학개론 ☒ 소방관계법규 ☐ 행정법총론 ☐
경채	소방학개론 ☐ 소방관계법규 ☒ 응급처치학개론 ☐ 화학개론 ☐ 컴퓨터일반 ☐
기타	기타 내용 서술 기재
저장/제출	

나. 이의제기 답변: '23. 4. 13.(목)까지

1-3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가. 합격자 공고: '23. 4. 14.(금) 14:00 / 119고시

나. 합격자 결정: 필기시험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의 득점자 중 아래의 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분야	공채		경채	
	선발예정인원	합격자 배수	선발예정인원	합격자 배수
필기시험 합격자 배수	1~10명	3배수	1명	3명
	11~20명	2.5배수	2명	6명
			3명	8명
	21~50명	2배수	4명	9명
			5명	10명
	51명 이상	1.5배수	6~50명	1.8배수
			51명 이상	1.5배수

다. 합격자 배수: 필기시험 합격자 배수 인원은 소수점 이하에서 올림함

라. 동점자 처리: 채용분야별 동점자가 있으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 하더라도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함

2

2단계: 체력시험

- 가. 시험기간: '23. 4. 17.(월)~5. 7.(일)
- 나. 장소공고: '23. 4. 14.(금) 14:00 / 119고시
- 다. 준 비 물: 응시표, 신분증, 상·하의 운동복, 운동화
- 라. 대 상 자: 필기시험 합격자(경제분야는 해당자)
- 마. 시험종목: 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 바. 평가배점: 총점 60점(종목별 10점 만점)
- 사. 측정방법: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 별표4 적용
- 아. 이의제기: 시험관리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결정
- 자. 합격자 결정: 6종목 총점(60점)의 50%(30점) 이상을 득점한 자

2-1

도핑테스트

- 가. 채취일시: 체력시험 종료 후 채취
 - 나. 채취장소: 체력시험 장소
 - 다. 채취대상: 응시인원의 5% 무작위 선정(소수점 절사, 최소 1명 이상 시행)
 - 라. 채취시료: 소변 90mL 이상
 - 마. 시료검사: 시료 봉인 후 전문기관에 의뢰
 - 바. 동의서 징구: 체력시험 응시자 등록 시 도핑테스트 동의서 징구
 - 사. 테스트 결과: 비정상(양성)으로 확인된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 후 부정행위자 조치 또는 면책신청 가능
- ※ 이의제기 시에는 시험실시기관에서 치료목적 사용 면책위원회(3인 이상)를 운영하여 금지약물 면책 여부 결정, 양성 판정 시 선발시험 최종합격은 취소함

2-2

체력시험 합격자 공고

- 가. 공고일시: '23. 5. 11.(목) 14:00
- 나. 공고방법: 소방청 및 119고시 누리집 게시
- 다. 합격기준: 6종목 총점(60점)의 50%(30점) 이상을 득점한 자

3-1 서류전형

가. 서류제출

- 1) 일시/장소: '23. 4. 17.(월)~5. 26.(금) ※ 시도별 별도 공고문 참고
- 2) 제출대상: 체력시험 합격자(체력시험이 없는 채용분야 응시자 포함)
- 3) 제출방법: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

나. 서류전형

- 1) 확인기간: ~'23. 6. 30.(금)
- 2) 확인내용: 응시자격, 가점, 임용결격사유, 근무경력 등 확인
- 3) 위원구성: 2명(내부 1명, 외부 1명) 이상으로 시도별 구성 후 추진
- 4) 서류확인: 행정정보 공동 활용 또는 서류 발급기관에 진위 확인 등

3-2 신체검사

가. 제출일시: **별도 공고**(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나. 대 상 자: 체력시험 합격자(체력시험이 없는 채용분야 응시자 포함)

다. 검사방법: 소방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후
기한 내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

※ 신체검사 결과 판정보류 등 재검사 사유가 발생한 응시자는 면접시험일 전일까지
최종 신체검사 결과 제출

라. 합격기준: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마. 합격발표: 최종합격자 공고 시 발표

☑ 신체검사 유의사항

- ▶ 약물검사(TBPE) 시 금식은 필요하지 않으나 에페드린 성분이 포함된 약(감기약, 천식약 등)이나 카페인 과다 복용 시(녹차, 홍차, 피로 회복제 등) 마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양성이 나올 수 있음. 이 경우 재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검사 전 약물 및 카페인 섭취에 주의 필요
 - ▶ '색각' 이상자는 의료기관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검사를 받아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시험에 응시
 - ▶ 색신 교정렌즈 등 부정한 기구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당해 시험에 불합격 처리됨은 물론 부정행위자로 처리
 - ▶ 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정밀검사 소견서 등은 발급기관 기준에 따름(최장 1년)
- ※ 약물검사(TBPE)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응시자는 추가검사를 받아야 함

4-1

종합적성검사

가. 시험일자: '23. 5. 16.(화)

나. 시험공고: '23. 5. 11.(목) 14:00 / 119고시

다. 검사대상: 체력시험 합격자

※ 응시자 준비물: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

라. 검사방법: 소방청 주관 통합검사

4-2

면접시험

가. 시험일자: '23. 5. 23.(화)~5. 26.(금)

나. 시험공고: '23. 5. 11.(목) 14:00 / 119고시

다. 시험대상: 체력시험 합격자

라. 면접방법: 소방청 주관 통합시험

※ 면접단계, 평정요소, 평정점수 등은 변경될 수 있음

마. 응시표 출력: 면접시험 장소 공고일에 응시표 분실자만 출력

※ 응시자 준비물: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

바. 합격자 결정

- 1)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함
- 2) 다만 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해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5

최종합격자

5-1

최종합격자 공고

가. 공고일시: '23. 7. 7.(금) 14:00

나. 공고방법: 119고시

라. 합격증명서 발급

- 1) 발급일자: '23. 7. 7.(금)~3년간
- 2) 발급대상: 최종합격자 중 희망자
- 3) 발급방법: 119고시에서 직접 발급(출력)

5-2 최종합격자 결정

가. 최종합격자 결정

-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라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시험단계별 취득성적에 반영비율을 적용한 합산점수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함
- 2)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으로 함

나. 추가 합격자 결정

- 1) 임용권자는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 임용권자는 최종합격자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이 취소되어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종합격자의 다음 순위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3 최종합격자 교육

가. 교육장소: 소방학교 및 교육대

나. 교육기간: 입교일부터 약 6개월

※ 교육기관 입교 시기는 시도마다 다를 수 있음

다. 입교유예: 병역의무의 수행, 부상, 질병의 치료, 임신·출산·육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훈련을 시작하거나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훈련을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음

※ 유예 또는 정지를 원하는 경우 '채용후보자 등 교육훈련 유예(정지) 신청서' 제출

가.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신분증 인정 등 유의사항

- ▶ 인 정: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 ▶ 불인정: 학생증, 자격수첩,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공무원증, 휴대전화 등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 신분증 사진
- ※ 응시표 출력 후 모든 시험절차에 지참하여야 합니다.

나. 응시자는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에서 지정한 시험장소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다른 지역(시험장)에서는 응시가 불가합니다.

다. 응시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시간까지 시험장에 입장해야 하며(이후 입장 불가), 공고된 시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은 사람은 응시 포기로 간주합니다.

☒ 시험장 폐쇄 시간 기준(예시)

- ▶ 시간 기준: 10:00 시험은 08:20에 개방하여 09:30:00까지 입장 가능
09:30:01부터 시험실시 건물 주 출입구 폐쇄
- ▶ 입구 기준: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한 출입구 기준

라. 시험공고의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119고시에 공고합니다. 공고내용 및 공지사항(시험일시, 장소 등)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마. 모든 시험은 우천, 폭설, 강풍 등에도 예정대로 시행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시험장소 등을 공지합니다.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방역지침에 따라 시험 일정이 긴급하게 변경될 수 있음

바. 시험관련 휴대전화 문자 안내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니 응시자는 반드시 공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응시자는 시험장 물품 등 파손,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소지품 분실 등 시험장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가. 시험원서 및 제출서류에 거짓 사진 등록 및 작성, 오기, 누락, 연락 불능, 자격 입증서류 미비, 개인정보 불일치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모든 서류 일체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자 정보를 등록한 사람은 향후 5년간 시험응시를 제한할 수 있음**

나. 응시자가 원서접수 시 제출한 서류에 대한 사실 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원서접수 완료 후 접수가 올바르게 되었는지 119고시에서 응시자 본인이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처는 응시자 휴대전화 번호로 작성)

라. 시험실시권자는 서류를 제출(파일 등록)한 응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원서접수 시 응시자격 및 가점 등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반드시 동의해야 합니다.

바.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기재된 사항을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사. 발급받은 지 오래된 자격증은 법령 개정으로 자격 명칭이 변경되었을 수 있으니 현행 자격 명칭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등의 가점은 만점의 5%, 3%를 가산하며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만점의 10%, 5%를 가산하며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니 원서접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전 응시자 준비사항

①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록증(해당자)

┌ 응시자가 의사상자 본인인 경우: 의사상자 등록증

└ 응시자가 의사상자 본인이 아닌 경우: 의사상자 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해당자)

자. 가산점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가산점 등록 시 유의해야 합니다.

가.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시험장소 및 시험실)에 착석하여 감독관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 시험장 유의사항

- ▶ 응시자는 시험장의 위치, 교통편, 이동 소요 시간 등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험 전날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 시험장은 정문만 개방하고 출입 통제는 시험장 건물의 주 출입구 통과시간 기준입니다.
- ▶ 응시자 이외의 사람은 출입이 불가합니다.

나. 원서접수 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응시자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원의 개명판결문을 지참하여 필기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인별 성적은 답안지 전산 판독 결과에 따르며, 답안지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라. 답안은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해야 하며,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때는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1) 표기한 답안을 수정할 때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주어야 합니다.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2)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 또는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발생하는 판독 결과 등에 대한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채점오류(귀책 사유) 사례

- ▶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
- ▶ 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된 경우
- ▶ 답안지 여백 낙서, 훼손 등으로 채점 불가능한 경우
- ▶ 예비표기 하여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
- ▶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이외 필기구(연필, 샤프, 적색펜 등) 사용한 경우
- ▶ 불량 또는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사용으로 마킹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
- ▶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를 훼손한 경우
- ▶ 수정테이프 사용 후 번짐, 뜯김 등이 발생한 경우

<보기> 올바른 표기: ● 잘못된 표기: 

마. 답안지는 본인의 응시표를 확인 후 직접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필적감정용 기재) 예시문과 동일한 내용을 본인의 필적으로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2) (자필성명) 본인의 한글 성명을 정자로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불이익(당해시험 무효 처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교체답안지 작성) 답안지를 교체하면 반드시 필적감정용 기재란, 자필성명, 응시번호, 생년월일 등을 빠짐없이 작성(표기)해야 하며 작성한 답안지는 1인 1매만 유효합니다.
- 바.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 모든 통신기기나 전자기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문제지 배부 후 발견 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1)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펜, 카메라 안경,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무선호출기, PDA, 전자계산기, 전산기기, 태블릿 PC,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 2) 통신기기나 전자기기를 소지한 응시자는 시험실시 전 전원을 끈(off) 후 시험실 전면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실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문제지 배부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사. 문제지 배부 후 시험 시작 전에 문제지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응시자는 문제지의 과목순서대로 답안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때도 답안지에 기재된 과목순서대로 채점이 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차.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 전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를 마시는 것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하게 시험을 중단할 때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은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카.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 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답안지에 성명, 생년월일, 응시번호, 시험감독관 서명, 필적 감정용 기재란을 기재하지 않아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무효답안으로 처리합니다.

☑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는 사례

- ▶ 부정행위자 조치: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적용
-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무효 처리기준으로 공고한 행위

- 시험지(문제지, 답안지)가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 간에 대화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 간에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타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행위(**공고문에서 별도 시험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허용함**)
-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파.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한 시험 운영을 위하여 응시자(본인)의 확진 및 자가격리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 코로나19 감염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별도 시험장 운영 안내】

1. (대상) **필기시험 응시자** 중 아래 사항의 하나 이상 해당하고 신청방법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한 응시자

- ①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통지를 받아 응시일까지 격리 중인 응시자
- ②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자가검진키트)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항원이 발견된 응시자
- ③ 본인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코로나19 PCR 검사가 진행 중인 응시자
- ④ 발열 또는 인후통 등의 의심 증상이 확인되어 코로나19 PCR 검사가 진행 중인 응시자

2. (신청기한) '23. 3. 17.(금) 18:00까지

※ 신청기한까지 응시 신청서가 도착하지 않으면 응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필기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

3. (신청방법) ①~③ 순차 실시

- ① 소방청 담당자에게 자진신고(044-205-7294)
- ② 지자체 보건소에 본인이 시험 응시자임을 통보
- ③ 제출서류는 전자우편으로 제출

4. (제출서류)

- ① 코로나19 별도시험 응시 신청서
- ②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③ (확진자) 의사 소견서
- ④ (자가격리자) 자가격리 통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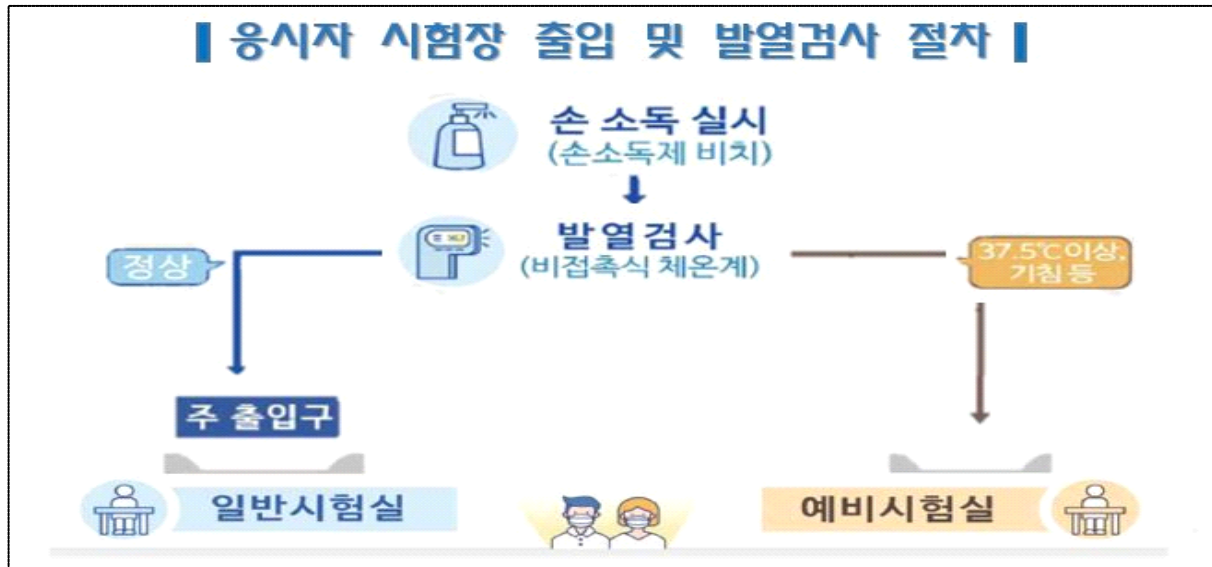
※ 제출서류는 방역당국 지침 및 시험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시험안내) 시험응시 신청자에게 개별 유선 통보

6. (유의사항) 확진 및 자가격리자 방역지침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검사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응시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 가능**

- 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을 전면 통제합니다.
- 나.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하고,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는 일반시험실 입실이 제한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다. 모든 응시자는 시험 당일 신분 확인 시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여야 합니다.
- ※ 마스크는 KF94 등급 이상을 사용하시고,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착용
 - ※ 시험장에서는 마스크를 제공하지 않으니 개인 마스크를 착용 후 입장하시고, 분실 및 착용 중 훼손 등에 대비하여 여분의 마스크를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 라. 코로나19에 확진되었거나 자가격리 중인 응시자는 일반 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하며, 시험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방역당국과 협조하여 사전에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 확진 및 자가격리자 시험응시 방법은 '코로나19 자진신고자 유의사항 안내문' 등 참고

【 자진신고 시스템 운영 】

- ▶ 신청대상: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통지를 받아 시험응시일까지 격리 중인 응시자
- ▶ 신청기간: 시험단계별 공고문 참고
- ▶ 신청문의: 응시지역 시도 소방본부
- ▶ 신청서류: 별도시험 응시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의사소견서 또는 자가격리통지서

- 마. 모든 응시자는 시험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첨부)”에 따라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및 발열검사, 시험실 환기 등 시험 당일 진행되는 안전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시험에 응시하는 모든 응시자는 시험 시행일로부터 10일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지켜봐야 하며,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한 시간까지 공고된 장소에서 등록(핸드링 등)한 후 시험장에 입장하여야 하며, 등록 시간 종료 후에는 입장이 불가합니다.
- 나. 금지약물 복용이나 금지된 방법을 사용하여 부정으로 합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응시자를 대상으로 도핑테스트를 시행합니다.
- ※ 체력시험 응시자 중 5%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도핑테스트 실시(최소 1명 실시)
- 다. 체력시험에 부정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된 방법을 사용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라.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양성)으로 확인되면 체력시험에 합격하였더라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마. 시험장 내에서는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체력시험 장면을 촬영할 수 없으며 체력시험 중 전자·통신장비 소지자(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고 응시자가 아닌 사람은 시험장 출입을 금지합니다.
- 바. 체력시험 전 또는 실시 중에 응시자 부주의로 발생한 부상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합격하는 경우 체력시험을 연기하거나 추가 시행하지 않습니다. 시험실시기관에서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책임지지 않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의 경우 실수로 넘어졌을 때 포함) 그 해당 종목에만 측정 기회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재시험은 시험 당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시험본부에서 판단에 따라 시행합니다.
- 사. 체력시험 중에는 판정관이나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허가 없이 자리를 떠나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추가 시험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 ※ 부상 등의 사유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 종목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그 이전까지 취득한 점수가 인정됩니다.
- 아. 체력시험 응시 중 바닥 미끄럼 등에 주의하시고 체력시험에 영향을 주는 개인 보조용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보조장비 착용 등 시험 유의사항

- ▶ 스포츠 테이핑, 상처 보호용 밴드는 목적에 맞는 용도로만 사용 가능
- ▶ 탄산마그네슘 가루, 붕대, 복대 등 보호대 사용 금지
- ▶ 악력, 배근력 종목에서는 시험 운영 기관에서 제공하는 반 코팅 장갑 사용 가능
- ▶ 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복장(후드티 등) 및 용모(긴 손톱, 긴 머리)는 시험 운영과정에서 제재 예정
- 긴 머리는 머리 뒤쪽으로 묶어서 체력측정 기기 등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할 것
- ▶ 물·음료는 개인 지참(물·음료 이외의 다른 액체류 제품은 섭취 금지)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제2항제4호“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 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에 해당

자. 체력시험 장비 제조사, 종류 등은 시험 전에 공개하지 않으며, 체력 시험 운영(측정방법, 실격기준 등) 교육은 시험 시작 전 응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응시자 부주의로 교육을 받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 악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 시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버리고 평가점수를 산정합니다.
- ▶ 배근력, 제자리멀리뛰기 측정 시,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는 버리고 평가점수를 산정합니다.

차. 시험실시기관에서는 체력시험 판정 보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영상을 촬영할 수 있으며, 응시자가 체력시험 등록 시 체력시험 영상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카. 체력시험 중 촬영되는 동영상은 시험판정을 위한 보조자료로 활용하며 응시자에게는 비공개로 운영합니다.

- ▶ 체력시험장 입장 시 영상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종목별 시험 종료 후 폐기
- ▶ 종목별 측정 시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 종목을 실시한 후 즉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영상 촬영 판독 결과에 따라 이의제기 반영 여부가 결정되며 이후 이의제기는 불가합니다.
- ▶ 촬영된 영상으로 판정이 어렵거나, 장비의 고장 등으로 촬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종목 판정관의 최초 판정 결과에 따릅니다.

타. 긴장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체력시험 응시로 각종 부상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 체력시험 시행 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체력시험 과정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하여 시험실시기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파. 체력시험 응시 대기, 사전 교육, 종목이동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종목별 측정 시에는 마스크를 벗고 시험에 응시합니다.

- 가. 신체검사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시험응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소방공무원 선발시험에 불합격 처리되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까지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나. 소방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약물검사(TBPE) 결과를 포함하지 않은 신체검사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 신체검사서는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로 제출해야 하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라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 반명함판(3cm×4cm) 컬러사진 1~2매(병원마다 다름), 신체검사 수수료(병원마다 다름)를 준비하여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마. 색신교정렌즈 등 부정한 기구를 사용하다 적발된 사람은 당해 시험에 불합격 처리됨은 물론 부정행위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바. 신체검사 결과는 전산에 기록되어야 하며, 수기로 작성한 신체검사 결과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청력, 혈압, 시력은 반드시 수치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사. 신체검사서는 반드시 검사를 시행한 지정병원의 압인, 계인 처리, 담당 의사 서명(인), 지정병원 의료기관장 직인 날인 등의 방법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아. 신체검사 결과 판정보류된 사람은 면접시험 전일까지 정밀검사 또는 재검사 결과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밀검사 또는 재검사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자.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응시자 본인이 부담하며, 재검사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차. 신체검사서 제출 방법 및 제출기한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종합적성검사 관련 검사일시, 검사장소, 검사방법, 준비물, 진행방법 등은 별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부터 소방청 주관 통합검사로 운영될 예정이니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모든 제출서류는 시행공고일 이후 발행된 원본(자격 및 면허증 사본 가능)만 인정합니다.

다. 제출서류 확인 결과 거짓 사실로 판명되면 당해 시험을 정지 및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라.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담당자 서명은 인정하지 않음)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공증받은 한글 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가.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한 시간까지 공고된 시험장소에 입장해야 하며, 등록 시간 종료 후에는 입장이 불가합니다.

나. 면접시험 세부 사항은 시험 당일에 교육하며 응시자의 부주의로 교육을 받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시험장 물품의 파손·훼손 등의 경우 응시자 본인이 변상해야 하며, 시험장 전체는 금연 구역으로 흡연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라. 시험 중 본인의 소지품은 본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에서는 소지품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장하기 전 시험관리관에게 개인 소지품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 시험장 내에서는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면접시험 장면을 촬영할 수 없으며, 면접시험 중 전자·통신장비 소지자(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합니다.

바. 면접시험 중에는 시험관리관과 면접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허가 없이 자리를 떠나는 사유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응시자는 추가 시험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 사. 원서접수 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응시자는 응시원서 기재사항 정정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면접시험 등록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 면접시험에 대리 시험을 의뢰·응시한 사람 등 부정행위자는 「소방 공무원임용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등과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 면접시험 중 시험관리관과 면접위원의 지시에 불응하는 사람은 「소방 공무원임용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 등과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한 시험 운영을 위하여 응시자(본인)의 확진 및 자가격리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8 최종합격자(교육훈련 등)

- 가.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되면 합격 취소 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 나. 최종합격자는 소방학교에서 약 6개월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선발 예정 계급으로 임용합니다.

※ **신임교육 입교 일정 및 임용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소방학교 교육 중 피복 및 숙식을 제공하고 매월 소방사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를 지급합니다.
- 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임용된 사람은 채용분야에서 필수보직기간에는 다른 부서로 전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마. 병역의무의 수행, 부상, 질병의 치료, 임신·출산·육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훈련을 시작하거나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훈련을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유예 또는 정지를 원하는 경우 '채용후보자 등 교육훈련 유예(정지) 신청서' 제출

V. 연락처 및 주소

시도별	전화번호	주소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044-205-7287~94	세종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506호 (http://119gosi.kr)
서울소방학교 인재채용팀	02-2106-3621~3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1 (https://fire.seoul.go.kr/school)
부산 소방행정과	051-760-3023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216 (https://119.busan.go.kr/119examinfo)
대구 소방행정과	053-350-4011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112 (http://www.daegu.go.kr/119)
인천 소방행정과	032-870-3012~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90 (https://www.incheon.go.kr/119/index)
광주 소방행정과	062-613-8022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https://www.gwangju.go.kr/)
대전 소방행정과	042-270-6193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https://www.daejeon.go.kr/dj119)
울산 소방행정과	052-229-4523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2별관 3층 소방행정과 (https://fire.ulsan.go.kr/)
세종 소방행정과	044-300-801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618호 (https://www.sejong.go.kr/fire/index.do)
경기도 인재개발팀	031-329-0321~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천덕산로 11번길 42 (https://119.gg.go.kr/)
강원 소방행정과	033-249-5104, 5114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신관1층 (https://fire.gwd.go.kr/fire/partici/parti_recruitment)
충북 소방행정과	043-220-4823	충북 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1로 57 (https://www.chungbuk.go.kr)
충남 소방행정과	041-635-5513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http://www.cn119.go.kr/index.cn119)
전북 소방행정과	063-280-3842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16층 (https://www.jeonbuk.go.kr/index.jeonbuk) (http://www.sobang.kr/index.sko)
전남 소방교육과	061-860-4726	전남 장흥군 장흥읍 평화우산길 212-43 (https://www.jnsobang.go.kr/jnsobang/commu/test/)
경북 소방행정과	054-880-6152 054-880-6155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https://www.gb.go.kr/Main/open_contents/section/exam_info/index.html)
경남 소방행정과	055-211-532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https://www.gyeongnam.go.kr/index.gyeong)
제주 소방정책과	064-710-35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9길 22 (http://www.jeju.go.kr/119/notice/exam.htm)
창원 소방정책과	055-548-9313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 (https://www.changwon.go.kr/119/)

※ 원서접수 기간 시스템오류 문의 콜센터: SE코리아, 070-4290-9611~2



소 방 청
National Fire Agency **119**

- 공고문은 119고시(<https://119gosi.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